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26일, 정성국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3차 전체회의(2025.9.23.)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
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정성국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대입 전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¹⁾, 인성·능력·

1)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이를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인 입학사정관을 두고 있음²⁾.

현재 입학사정관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대학에서 총 9,341명이 운영 중으로 이 중 전임사정관이 1,259명, 위촉사정관이 8,082명임.

<입학사정관 현황 ('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구분	전임사정관				위촉 사정관	총계
	채용사정관	교수사정관	전환사정관	소계		
총 인원	976명	166명	117명	1,259명	8,082명	9,341명

- 채용사정관: 대학이 전임으로 채용한 입학사정관
- 교수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상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대학이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해 책임시수를 감면하고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교수
- 전환사정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위하여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
- 위촉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총장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내부위촉사정관과 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분됨.

(자료 : 교육부)

이러한 대입전형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일정기간 학원 및 입시상담 전문업체 취업 제한, 회피·배제 제도 등을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음³⁾.

그러나, 현행법 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는 외부 위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입 전형과 관련한 평가에 참여하면서도 회피·배제 의무를 부과하는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입학사정관의 회피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에 위촉된 외부 위원의 경우도 회피·배제 의무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전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3)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다만, 개정안은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처벌 수위에 관하여는 책임과 벌칙이 비례하도록 설정되었는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제도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및 실효성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형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 원칙⁴⁾ 및 행위시법주의 원칙⁵⁾에 따라 법률의 제정·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하거나 강화한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⁶⁾ 신설 형벌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붙임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수정안 본문, 수정안조문대비표)

[붙임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5)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6)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894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고, 회피 신고 의무가 준용되는 외부 위원도 벌칙 대상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벌칙 규정에 해당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개정안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함(안 제64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4조의2제4항(제3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업무 배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부칙 같은 조 중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을 “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업무 회피·배제 의무와 벌칙에 관하여는 제34조의2제5항 및 제6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 2.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 ----- -----. <u><삭 제></u> <u><삭 제></u>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③ (생략)	<u>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u>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u> ③ (개정안과 같음)
---	--	--

	부칙 <u>제2조(입학사정관 회</u> <u>피·배제 의무 등</u> <u>에 관한 경과조치)</u> <u>이 법 시행 전의</u> <u>입학사정관 회피·</u> <u>배제 의무 등에 관</u> <u>하여는 제34조의2</u> <u>및 제64조제1항의</u> <u>개정규정에도 불구</u> <u>하고 종전의 규정</u> <u>에 따른다.</u>	부칙 <u>제2조(입학사정관의</u> <u>학생선발 업무 배</u> <u>제 등에 관한 경</u> <u>과조치)</u> ----- -----<u>입학사정관</u> <u>의 학생선발 업무</u> <u>회피·배제 의무</u> <u>와 벌칙에 관하여</u> <u>는 제34조의2제5</u> <u>항 및 제64조제2</u> <u>항제4호</u>----- ----- -----.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대학의 장이 평가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

제6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4조의2제4항(제3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대학의 장이 평가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u>
제64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6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4조의2제4항(제3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u>

③ (생 략)	<u>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